



COSMOS STANDARD

기술 가이드

버전 4.2
2025년 9월 1일

본 문서는 2025년 9월 1일 배포된 COSMOS Technical Guide의 번역본이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문 버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개 3

제1장: COSMOS 공식 표기를 위한 주요 요구 사항 개요 COSMOS ORGANIC, COSMOS NATURAL, COSMOS CERTIFIED, COSMOS APPROVED

제2장: 기술 사항 및 표준에 관한 해석 지침

1. 소개 9

2. 규정 9

3. 범위 10

4. 정의 11

5. 일반 사항 12

 5.1 예방 원칙..... 12

 5.2 동물 실험..... 13

 5.3 지속가능성 13

6. 원료의 유래 및 제조 공정..... 14

 6.1 원료의 범주 14

 6.2 유기농 함량 계산 방법..... 16

7. 구성 규정 27

 7.1 유기농 인증 제품 27

 7.2 NATURAL 인증 제품..... 30

 7.3 천연 함량 계산 방법..... 30

 7.4 팜유와 팜핵유 및 파생 제품 30

 7.5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인증 30

 7.6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원료 승인 30

8. 보관, 제조 및 포장 31

 8.1 보관 31

 8.2 제조 31

 8.3 포장 31

 8.4 섬유 33

9. 환경 관리 34

 9.1 환경 관리 계획 34

 9.2 세척 및 위생..... 34

10. 인증 표시 및 정보 전달.....	35
10.1 일반 규정.....	35
10.2 유기농 인증 제품	35
10.3 천연 인증 제품의 경우.....	35
10.4 유기농 성분을 함유한 원료	35
10.5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원료	36
10.6 홍보 문구.....	37
10.7 회사명이나 제품군에 유기농을 사용하는 경우	37
10.8 이 표준과 관련된 시그니처, 이름, 용어의 사용	37
11. 인증 및 승인.....	38
11.1 인증	38
11.2 승인된 원료	39
11.3 인증 기관.....	39
12. 표준 이행	40
12.1 효력 발생.....	40
12.2 적용일	40
12.3 전환 조치.....	40
부록 I.....	41
부록 II.....	41
부록 III	41
부록 IV	41
부록 V	41
부록 VI및 부록 VII	42
부록 VIII.....	44
부록 IX.....	45

소개

이 가이드에서는 일부 기준의 예시와 그림을 통해 회사가 COSMOS-standard 요구 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COSMOS-standard 위원회에서 승인한 해석 및 설명을 제공합니다.

기술 가이드에 대한 내용은 다음 2개의 장에서 소개됩니다:

- 제1장에서는 COSMOS 공식 표시에 필요한 주요 요구 사항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COSMOS-standard, COSMOS-standard 관리 표준서 및 COSMOS-standard 인증 표시 가이드에서 기술한 모든 관련 기준에 기초한 요약입니다
- 제2장에서는 COSMOS-standard의 기술 사항과 표준에 관한 해석 방법을 제공합니다

번호 체계는 COSMOS-standard와 같습니다.

제1장: COSMOS 공식 표기를 위한 주요 요구 사항 개요 COSMOS ORGANIC, COSMOS NATURAL, COSMOS CERTIFIED AND COSMOS APPROVED

본 요약 내용은 COSMOS-standard, COSMOS-standard 관리 표준서 및 COSMOS-standard 인증 표시 가이드에 기초합니다. 표준 문서는 www.cosmos-standard.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OSMOS-standard</i> 공식 표기	COSMOS ORGANIC	COSMOS NATURAL	COSMOS CERTIFIED	COSMOS APPROVED
<i>분류</i>	화장품 완제품		화장품 원료	
<i>대상</i>	유기농 제품의 제조 업체와 상표 소유자 및 협력 업체	천연 제품의 제조 업체와 상표 소유자 및 협력 업체	유기농 성분이 함유된 원료의 제조 업체와 상표 소유자 및 협력 업체	유기농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원료의 제조 업체와 상표 소유자
<i>범위</i>	범위 1: 유기농 또는 천연 화장품 인증, 유기농 성분 함유 원료, 기본 제형			범위 2: 인증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유기농 원료의 승인

주요 표준	참고 표준 문서	COSMOS ORGANIC	COSMOS NATURAL	COSMOS CERTIFIED	COSMOS APPROVED
인증 표시와 정보 전달	표준: 10장 인증 표시 가이드 4장~8장	다음 요구 사항은 라벨 내 의무 표기 사항입니다. ‘COSMOS ORGANIC’ 공식 표기 - 인증 기관 언급 - 유기농 및 천연 유래 함량 (%) 언급 - 전성분(INCI) 목록 내 유기농 원료 표시	다음 요구 사항은 라벨 내 의무 표기 사항입니다: ‘COSMOS NATURAL’ 공식 표기 - 인증 기관 언급 - 천연 유래 함량(%) 언급	다음 요구 사항은 라벨 내 의무 표기 사항입니다: ‘COSMOS CERTIFIED’ 공식 표시 - 인증 기관 언급 - 유기농 함량(%) 언급	- 유기농 인증 언급 금지 ‘COSMOS APPROVED’ 공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원료	표준: 5, 6, 7.4장 및 부록 I~V, VIII	- 예방 원칙: GMO 및 방사선 금지 - 지속가능성: 팜유, 팜핵유, 파생품 관련 특정 기준으로, 유기농 또는 지속가능한 출처(CSPO)여야 한다. (향수 및 향수의 원료 또는 석유 화학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는 원료와 같은 복잡한 혼합물은 예외) - 모든 원료는 범주 및 공정에 따라 검증되어야 함(물, 미네랄, PPAI, CPAI, 기타 원료)			

주요 표준	참고 표준 문서	COSMOS ORGANIC	COSMOS NATURAL	COSMOS CERTIFIED	COSMOS APPROVED
조성	표준: 7장, 부록 V, 부록 VI	- 유기농 함량 최소 20% 이상 또는 10% 이상(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비유화 수용성 제품, 미네랄 또는 미네랄 유래 성분이 80% 이상인 제품의 경우) - PPAI는 최소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함 - 남은 PPAI가 부록 VI에 수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유기농 원료여야 함 - 부록 VII에 수록된 CPAI는 반드시 유기농 원료여야 함 - 석유 화학 부분은 최대 2%(부록 V)	- 최소 유기농 성분 없음 - 석유 화학 부분은 최대 2%(부록 V)	- 유기농 성분 함유 - 유기농 성분이 없는 베이스포물라	유기농 성분 미함유
포장 및 섬유	표준: 8.3장, 8.4장, 부록 IX	1차 및 2차 포장과 섬유 구성 요소는 검증되어야 하며 규격에 부합해야 함 - 포장의 직간접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조 및 보관	표준: 8.1장, 8.2장	- 제품의 순수성에 대한 혼란과 위험 방지 - 제품과 원료의 오염 방지			해당 없음
환경 관리	표준: 9장	- 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사용되는 모든 세척제 및 소독제는 검증하고 기준에 부합해야 함			해당 없음

주요 표준		참고 표준 문서	COSMOS ORGANIC	COSMOS NATURAL	COSMOS CERTIFIED	COSMOS APPROVED
평가 과정	신청서	관리 표준서: 8장, 8.3.1장	모든 잠재 고객이 신청서 작성			
	신청서 검토	관리 표준서: 8장	-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사가능성과 잠재적인 고객의 정보 확인 - 가능하다면 제안 사항 문서화			
	평가	표준: 11.1장, 11.2장 관리 표준서: 제 8장, 8.3.2장	- 제품 및 원료 별 서류 평가 - 최초 현장 심사			원료 별 서류 평가
	검토 및 인증 여부 결정	관리 표준서: 8장, 8.3.3장	타당한 인증 결정을 위한 평가 결과 검토			
	인증 문서	관리 표준서: 8장, 8.3.4장	인증 결정이 긍정적인 경우, 인증 문서 작성			
	인증 제품 목록	관리 표준서: 8장	인증 제품과 인증 원료 목록은 COSMO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평가 과정	주요 표준	참고 표준 문서	COSMOS ORGANIC	COSMOS NATURAL	COSMOS CERTIFIED	COSMOS APPROVED
	사후 관리	관리 표준서: 8장, 8.3.6장	- 평가 절차는 매년 갱신되어야 함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업데이트 - 연간 사후 관리 심사			- 평가 절차는 매년 갱신되어야 함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업데이트 - 최소 3년마다(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원료 재평가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관리 표준서: 8장, 8.3.7장	- 변경 사항이 인증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필요한 고객 제공 정보 - COSMOS 요구 사항 변경과 결과에 따른 고객의 정보			
	인증 종료, 범위 축소, 중지 또는 철회	관리 표준서: 8장, 8.3.8장	고객의 요구나 인증 기관의 결정에 따라 인증 종료, 범위 축소, 중지 또는 철회 가능			
	불만 및 이의 제기	관리 표준서: 8장	- 누구나 불만이나 이의 제기 가능 - 인증 기관은 제기된 불만이나 이의를 처리하고 답변/결정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함			

제2장: 기술 사항 및 표준에 관한 해석 지침

1. 소개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2. 규정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3. 범위

표 1: 어떤 경우에 인증을 신청해야 하나?

- 상표 소유자: 정해진 규격에 따라 협력 업체가 제조하는 제품의 상표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상표 소유자가 제조 업체일 수 있습니다
- 유통 업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판매되는 제품에 유통 업체나 상표 소유자(또는 둘 다)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업체: 제조 단계를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포장, 충전, 벌크 변경, 보관 등)만 제공하는 업체
- 제조 업체: 제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제조 업체는 상표 소유자나 협력 업체일 수 있습니다
- 하청 업체 제조 하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는 원료나 포장재를 구입하고 상표 소유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고객 분류	인증 신청 필요	인증 신청 불필요
유통 업체/ 상표 소유자	인증 신청자는 상표 소유자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입니다	▪ 인증 신청자는 단순 유통 업체로 다른 상표의 제품을 판매하지만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 인증 신청자는 상표 소유자이지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는 COSMOS 인증에 신청하였고 모든 과정을 관리합니다 (인증제품의 생산, 판매, 홍보) ▪ 인증 신청자는 공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이미 COSMOS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조 업체/ 하청 업체	직접 제조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회사입니다	▪ 이미 코스모스 인증을 신청한 브랜드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품을 제조합니다 ▪ 하청업체로서 귀사의 제품은 이미 코스모스 공인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되었습니다 참고: 두 경우 모두 이 활동이 인증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업체	서비스 제공 업체의 경우 공인 인증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의 활동은 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든 변형하지 않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팔레트 보관 후 다시 발송 등). 공인 인증 기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작업장을 심사해야 합니다.	

위 표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지 불확실하다면 인증 기관에 문의해 상업성 위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증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정의

'유기농'

인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된 성분은 COSMOS-standard에 의해 인정됩니다. 그러나, COSMOS-standard에 따른 유기농 성분 비율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첨가된 물의 양, 방부제 등).

'색조 화장품'

완제품에 효과안료(effect pigment)가 사용되어 적용 부위에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제품은 COSMOS표준의 정에 따라 '색조 화장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5. 일반 사항

원료나 제품에서 농약이나 기타 오염물이 검출되었다면 인증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오염의 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염을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 기관은 해당 원료나 제품의 인증 상태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1 예방 원칙

5.1.1 나노 물질

코팅 입자(예, 코팅된 TiO_2)는 코팅을 제외한 입자의 최소 입경이 100nm 보다 큰 경우 허용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TiO_2 와 ZnO 를 UV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료 물질은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가 제시한 티타늄디옥사이드(나노형) 1와 징크옥사이드(나노형)¹ <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TiO_2 와 ZnO UV 필터는 SCCS 의견² 권고에 따라 에어로졸이나 펌프 디스펜서(분무 노즐이 없는 경우는 제외)와 같은 분무형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¹ SCCS/1516/13 2014년 4월 22일 개정판 및 SCCS/1489/12 2012년 12월 11일 개정판
https://health.ec.europa.eu/publications_en

² 나노 형태의 카본 블랙 CI 77266, 티타늄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에 적용되는 '스프레이형 어플리케이션/제품' 정의에 관한 의견

TiO_2 와 산화아연 코팅제로 사용되는 실리카는 별도 분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티타늄옥사이드가 색소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경우 별도 분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5.1.2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COSMOS-standard에서는 화장품 원료와 성분을 얻는 데 유전자 변형 식물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 업체는 특정 화장품 원료나 성분 생산에 사용된 식물의 명칭과 원산지를 반드시 원료 사용 질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은 토양 협회(Soil Association, 영국)가 개발한 지리적 위험 계량 지표(Geographical Risk Matrix)에 따라 GMO의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필요하다면 제조 업체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SMOS-standard에서 유전자 변형을 언급할 때 참조하는 규정은 의도적인 GMO 환경 방출에 관한 유럽 연합 지침 2001/18/EC입니다. 제2조에서 GMO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록 1A에서는 유전자 변형 기법을 소개하고 요약합니다.

5.1.3 이온화 방사선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5.2 동물 실험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5.3 지속가능성

5.3.1 팜유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6. 원료의 유래 및 제조 공정

6.1 원료의 범주

6.1.1 물

인증 기관은 물이 COSMOS 인증 제품 또는 COSMOS 인증 원료에 물이 단일 성분으로 사용될 경우 수질을 확인합니다(분석 또는 COSMOS-standard과 동등한 표준 충족 등).

COSMOS APPROVED 원료에 물을 사용할 경우 특별한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염소 처리된 물과 탈염소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1.2 미네랄 및 미네랄 유래 원료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6.1.3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PPAI)

동물 유래 원료

우유, 꿀, 밀랍 등의 동물 유래 원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I에 수록된 공정, CPAI 부록 II의 경우 수록된 공정을 사용하고 기타 관련 표준에 부합해야 함).

다른 동물 유래 원료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봉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나 전기적 자극으로 얻어진 달팽이 점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인증 기관이 세부 사항을 검토 및 승인된 후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사리 추출물과 로얄젤리는 동물성 원료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물 유래 성분

버섯류는 허용된 화학 공정을 거친 경우 CPAI로 계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100% PPAI로 계산됩니다.

1차 원료

IUCN 적색 목록에 등재된 멸종 위기 종에 의해 수확/수집되는 주요 원료의 한 가지 예시로 일부 지역에서 코코넛을 수집 및 수확하는 데 원숭이를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6.1.4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CPAI)

원자 경제성 - 반응 질량 효율

만약 제조 과정에서 여러 제품이 생성되고(오일의 비누화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생성되는 등), 생성된 모든 제품이 제조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사용되면, 한 물질만 원료로 사용되었더라도 모든 생성물의 중량을 계산 과정에 고려해야 합니다.

줄기 세포

줄기 세포는 유효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단, 배지 또한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질, 배양 배지는 자연적 또는 미생물학적 기원이어야 합니다. 낮은 농도(ppm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호르몬, 성장 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줄기 세포 배양액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배양에 사용된 이러한 물질은 대사 또는 제거되어야 하며 완제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 업체는 구체적인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한 원료

배지는 COSMOS-standard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지에 사용되는 각각의 원료는 반드시 미네랄, 식물, 미생물, 동물 또는 해양 유래(표준에 충족하는 것)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비 GMO 유래 원료여야 합니다.

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하는 공정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세균, 균, 효모 등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GMO에서 생성된 효소를 화장품 원료 제조에 사용하면 제조 업체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GMO에서 생성된 효소는 사용 전 정제됨
- GMO는 밀폐 용기 내에서 사용됨
- 공정 완료 후 GMO는 비활성화됨
- GMO가 환경에 방출될 경우를 가정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
- GMO가 환경에 우발적으로 방출될 경우를 대비해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함
- PCR(-)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 원료에 GMO DNA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제공함

소포제 및 기타 부수제는 생명 공학 기반 공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원료에 잔류해서는 안 됨).

비지속성, 생물 축적성, 독성 제품

생물 축적성이며 생분해성이 아닌 물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OECD 301 표준에 따라 부적합한 물질들을 포함합니다. => TEGEWA 분류 III = 높은 폐수 영향

6.1.5 기타 원료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6.2 유기농 함량 계산 방법

6.2.1 물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6.2.2 미네랄 및 미네랄 유래 원료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6.2.3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PPAI)

재구성할 제품의 탈수 알로에베라 분말 사례:

- 유기농 알로에베라가 다른 분말과 혼합된 경우, 최종 제품을 환원하기 위해 혼합 분말에 물을 첨가하는 경우, 수화된 유기농 알로에베라 분말은 유기농 함량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나머지 분말을 첨가하기 전에 먼저 유기농 알로에베라를 환원(수화)하는 경우, 환원된 유기농 알로에베라는 유기농 함량의 계산에 포함합니다

수용성 추출물(하이드롤레이트, 식물 증류추출물 포함)

표준:

비율 = [신선한 유기농 원물 / (추출물 - 용매)]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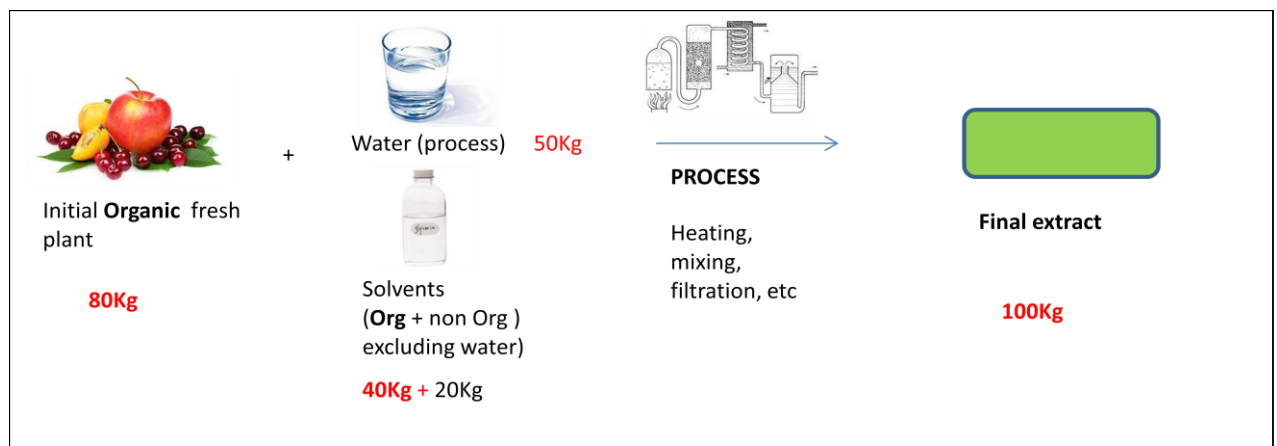
유기농 함량(%) = {[비율 × (추출물 - 용매) / 추출물] + [유기농 용매 / 추출물]} × 100

•Organic alcohol in organic extract

•No mixture of organic and non organic quality of the same plant

예시 1:

비율: 80 / (100 - 60), 비율이 1보다 크므로 1로 계산합니다.



유기농 함량(%) = {[1 × (100 - 60) / 100] + [40 / 100]} × 100 = 80%

예시 2:

사용 원료:

유기농 건조 꽃 = 2.5kg → 유기농 신선한 원물 11.25Kg과 동등

물 = 95.7kg

구연산 = 1.5kg(CPAI)

벤조산나트륨 = 0.2kg(NNI)

소르브산칼륨 = 0.1kg(NNI)

총 추출물 양 = 100kg

% ORG PPAI = (유기농 신선 원물 / 추출물) X 100 = 11.25%

% NNI = 0.3%

% CPAI = 1.5%

% ORG = 11.25%

천연 유래 함량(%) = 100 - NNI = 99.7%

식물 증류 추출물

사용 원료:

신선 원물 = 90kg(PPAI)

보존제 = 1.1kg(NNI)

최종적으로 생산된 증류수 = 90kg

비율 = [유기농 신선 원물 / (최종 추출물 - 용매)] = 90/90 = 1

유기농 함량(%) = {[비율 X (추출물 - 용매) / 추출물] + [유기농 용매 / 추출물]} X 100

유기농 함량(%) = {[1 X (90 - 0) / 90] + [0 / 90]} X 100 = 100%

보존제 함량(%)을 고려했을 때:

보존제 중량 / 최종 추출물 중량 = 1.1/90 = 1.2%

PPAI = Org PPAI = 100 - 1.2 = 98.8%

식물 증류 추출물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PPAI = 98.8%

% ORG PPAI = 98.8%

% NNI = 1.2%

비수용성 추출물(Oleolita/Macerate)

물을 이용하지 않는 추출물의 유기농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유기농 함량(%) = (유기농 식물* + 사용하는 유기농 용매) / (식물* + 총 사용 용매) X 100

*신선 또는 건조 식물

•Organic alcohol in organic extract

•No mixture of organic and non organic quality of the same plant

예시 1:

사용 원료: 유기농 신선 원물 45kg과 유기농 기름 55kg

$$\text{유기농 함량(\%)} = (45 + 55) / (45 + 55) \times 100$$

$$\% \text{ PPAI(기름과 식물)} = 100\%$$

$$\% \text{ ORG PPAI(기름과 식물)} = 100\%$$

$$\% \text{ NNI} = 0\%$$

$$\% \text{ CPAI} = 0\%$$

$$\% \text{ CPAI ORG} = 0\%$$

$$\text{유기농 함량(\%)} = \% \text{ ORG CPAI} + \% \text{ ORG PPAI} = 100\%$$

예시 2:

유기농 형태가 불가능한 식물이 부록 VI에 수록되지 않았다면 COSMOS Organic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총 PPAI 함량이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 원료: 비유기농 신선한 식물 45kg과 유기농 기름 55kg

$$\text{유기농 함량(\%)} = 55 / (45 + 55) \times 100$$

$$\% \text{ PPAI(기름 및 식물)} = 100\%$$

$$\% \text{ ORG PPAI(기름)} = 55\%$$

$$\% \text{ NNI} = 0\%$$

$$\% \text{ CPAI} = 0\%$$

$$\% \text{ CPAI ORG} = 0\%$$

$$\text{유기농 함량(\%)} = \% \text{ ORG CPAI} + \% \text{ ORG PPAI} = 55\%$$

예시 3:

유기농 형태가 불가능한 오일 용매가 부록 VI에 수록되지 않았다면 COSMOS Organic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총 PPAI 함량이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 원료: 유기농 신선 식물 45kg과 비유기농 기름 55kg

$$\text{유기농 함량(\%)} = 45 / (45 + 55) \times 100$$

$$\% \text{ PPAI(기름 및 식물)} = 100\%$$

$$\% \text{ ORG PPAI(식물 유래)} = 45\%$$

$$\% \text{ NNI} = 0\%$$

$$\% \text{ CPAI} = 0\%$$

$$\% \text{ CPAI ORG} = 0\%$$

$$\text{유기농 함량(\%)} = \% \text{ ORG CPAI} + \% \text{ ORG PPAI} = 45\%$$

예시 4:

COSMOS ORGANIC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복잡한 혼합물(3 성분 이상)은 기술 가이드 부록 VI 및 VII을 참조합니다.

참고: COSMOS ORGANIC 제품에서 '복잡한 혼합물'의 모든 성분이 부록 VI과 VII에 수록된 경우 모두 유기농 성분이어야 합니다. '복잡한 혼합물'의 성분 중 하나 이상이 부록 VI과 VII에 수록되지 않았다면, 모두 비유기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식물과 용매 2종의 혼합물(용매 A: 유기농, 용매 B: 비유기농).

사용 원료: 유기농 신선 식물 40kg 과 유기농 기름 40kg(용매A), 비유기농 기름 20kg(용매B)

$$\text{유기농 함량(\%)} = (40 + 40) / (40 + 40 + 20) \times 100$$

$$\% \text{ PPAI(식물과 기름)} = 100\%$$

$$\% \text{ ORG PPAI(식물 유래와 기름 둘 중 하나)} = 80\%$$

$$\% \text{ NNI}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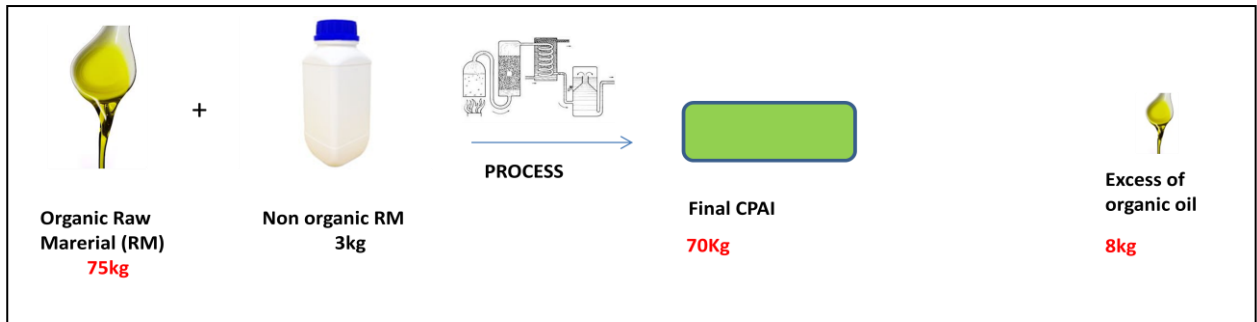
$$\% \text{ CPAI} = 0\%$$

$$\% \text{ CPAI ORG} = 0\%$$

$$\text{유기농 함량(\%)} = \% \text{ ORG CPAI} + \% \text{ ORG PPAI} = \mathbf{80\%}$$

6.2.4 화학적으로 가공된농산물 원료 (CPAI)

일반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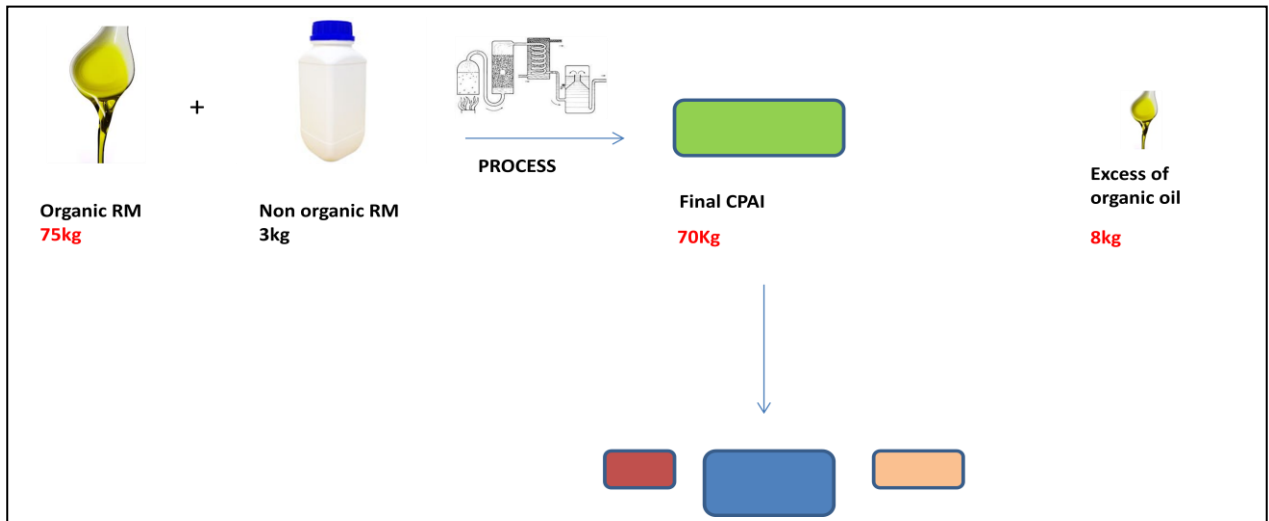
표준:

유기농 함량(%) = [(모든 유기농 주요 원료 - 과량 유기농 주요 원료) / (모든 주요 원료 - 과량 주요 원료)] X 100

예:

유기농 함량(%) = [(75 - 8) / (75 + 3 - 8)] X 100 = **95.7%**

특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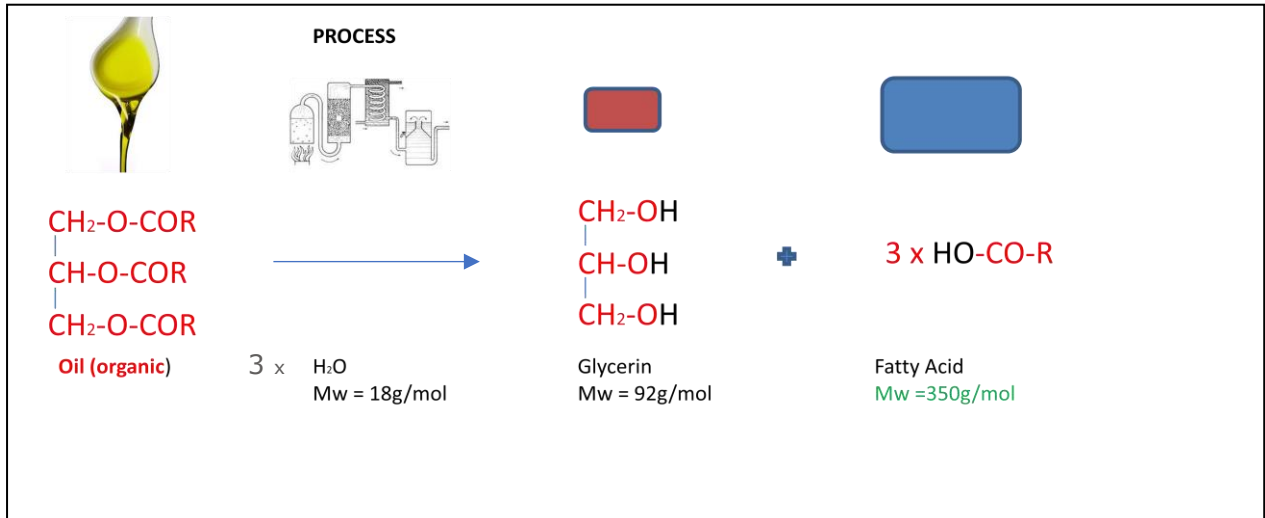


만약 최종적으로 얻은 CPAI가 다른 분자를 함유한다면 유기농 함량은 분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완제품이 단일 성분이거나 생성된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일반 CPAI 계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물이 하나 이상이라면 계산법은 물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분자의 구조에 따라 아래 참조).

가수 분해 예시



예:

$$\begin{aligned} \% \text{유기농 글리세린} &= \text{유기농 부분} / \text{전체} = (\text{Mw 글리세린 분자량} - \text{Mw 3 수소}) / \text{Mw 글리세린} \\ &= (92 - 3) / 92 \\ &= \mathbf{96.7\%}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유기농 지방산(FA)} &= \text{유기농 부분} / \text{전체} = (\text{Mw FA} - \text{Mw 수산화기(OH)}) / \text{Mw FA} \\ &= (350 - 17) / 350 \\ &= \mathbf{95.1\%} \end{aligned}$$

수화글리세린 추출물

1) 추출물의 유기농 함량:

- 1단계:

비율 = [유기농 신선 원물 / (추출물 - 용매)]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1로 계산합니다.

- 2단계:

유기농 함량(%) = {[비율 × (추출물 - 용매) / 추출물] + [유기농 용매 / 추출물]} × 100

2) % ORG CPAI:

화학식에서 글리세린 비율 X 글리세린의 유기농 지수(0.967)

CPAI ORG%와 PPAI ORG%를 합산해 수화글리세린 추출물의 총 유기농 함량을 계산합니다.

예:

사용 원료:

유기농 식물 씨 추출물	
(유기농 신선 원물)	= 0.25kg
유기농 글리세린	= 0.7kg(100% CPAI, 96.7% CPAI ORG)
물	= 0.75kg
총 최종 추출물	= 1kg에 다음을 포함합니다. 소르빈산칼륨 = 0.5%(NNI)과 벤조산나트륨 0.5% NNI)

$$\% \text{Org} = \left(R_x \frac{\text{extract} - \text{solvent}}{\text{extract}} + \frac{\text{orgsolvent}}{\text{extract}} \right) \times 100$$

$$R = \frac{\text{organic fresh plant}}{\text{extract} - \text{solvents}};$$

If $R > 1$ it is counted as 1

$$\% \text{NNI} = 0.5\% + 0.5\% = 1\%$$

$$\% \text{CPAI} = \frac{0.7}{1} \times 100 = 70\%$$

$$\% \text{CPAIorg} = 70 \times \frac{96.7}{100} = 67.7\%$$

$$\% \text{Org} = \left(\frac{0.25}{1-0.7} \times \frac{1-0.7}{1} + \frac{0.677}{1} \right) \times 100 = (0.25 + 0.677) \times 100 = 92.7\%$$

$$\% \text{PPAIorg} = 92.7 - 67.7 = 25\%$$

$$\% \text{PPAI} = \text{PPAIorg}$$

$$\% \text{Nat} = 100 - \text{NNI} - \text{PeMo} = 100 - 1 = 99\%$$

단일 성분으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장품 제조 업체가) 알코올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알코올의 실제 함량은 CPAI 함량으로 계산합니다(유기농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 알코올의 함량은 CPAI ORG% 함량으로 계산합니다). 알코올의 유기농 함유량은 희석 및 정제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유기농일 경우 CPAI 함량(%) = 유기농 CPAI 함량(%)입니다.

CPAI는 중량 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유기 알코올 제조 과정에서 물(또는 기타 성분)이 첨가되지 않을 경우 알코올 함량은 100% 유기물(100% CPAI/100% ORG CPAI)로 계산됩니다.

추출물에 사용되는 알코올

알코올이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에도 유기농 추출물에는 유기농 알코올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정에 비유기농 알코올이 사용된다면 원료는 유기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알코올과 추출물이 COSMOS ORGANIC 인증을 받으려면 부록 VI과 VII에 부합해야 합니다.

보통 추출물에서 사용되는 유기농 알코올의 희석 및 정제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으므로 추출물에서(이미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유기농 알코올 사용은 알코올의 함량을 100% 유기농으로 계산합니다(100% CPAI / 100% ORG CPAI).

수용성 알코올 용액 추출물**1) 추출물의 유기농 함량:**

• 1단계:

비율 = [유기농 신선 원물 / (추출물 - 용매)]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1로 계산합니다.

• 2단계:

유기농 함량(%) = {[비율 × (추출물 - 용매) / 추출물] + [유기농 용매 / 추출물]} × 100

2) % ORG CPAI:

유기농 알코올 함량(%) - 변성제 함량(%)

참고: 변성제 함량은 NNI로 계산합니다.

예:

사용 원료:

유기농 신선 원물	= 80kg
물	= 50kg
총 최종 추출물	= 유기농 변성 알코올 포함 100kg = 60%(변성제 1.2% CPAI 58.8% + NNI 1.2%)

$$\text{비율} = 80 / (100-60) = 2 \rightarrow \text{비율} = 1$$

$$\text{유기농 함량(\%)} = \{[1 \times (100-60) / 100] + [58.8 / 100]\} \times 100 = \% \text{PPAI ORG} + \% \text{CPAI ORG} = 98.8\%$$

$$\% \text{PPAI} = 100 - \% \text{CPAI} - \% \text{NNI} = 40\%$$

$$\% \text{PPAI ORG} = 40\%$$

$$\% \text{CPAI} = 58.8\%$$

$$\% \text{CPAI ORG} = 58.8\%$$

$$\% \text{NNI} = 1.2\%$$

석유화학 성분(PeMo) 계산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30% 수용액의 경우:

분자 전체의 분자량 = 342g/mol

석유 화학 부분 분자량 = 159g/mol

1) 분자의 석유 화학 부분 함량(%) = $159 / 342 \times 100 = 46.4\%$

2) 예시 석유 화학 부분의 함량(%) = $0.3 \times 0.464 \times 100 = 13.9\%$

→ 이 예시에서는 16.1%의 CPAI와 13.9%의 석유 화학 성분을 가정합니다.

발효 추출물의 유기농 CPAI 계산

유기농 쌀 100g + 물 y g + 효모 z g + 용매 10g => 발효 추출물 90g

유기농 CPAI 함량(%) = 비율 x (추출물 - 용매) / 추출물

$$\begin{aligned} \text{비율} &= \text{유기농 쌀} / (\text{추출물} - \text{용매}) \\ &= 100 / (90 - 10) \\ &= 1.25 \end{aligned}$$

비율이 1보다 크므로 1로 계산합니다.

$$\begin{aligned} \text{유기농 CPAI 함량(}\%) &= (\text{추출물} - \text{용매}) / \text{추출물} \\ &= (90 - 10) / 90 \\ &= 88.9\% \end{aligned}$$

7. 구성 규정

일반 규정:

원료 농도에 대해 주어진 범위가 있는 경우, 유기농, 천연 및 비천연 백분율 계산 시 다음 농도 값이 고려됩니다:

- 유기농과 천연 유래 성분의 최소값 = 덜 유리한 값
- 비자연 성분의 최대값
- 비유기농 성분 PPAI의 최대값(PPAI ORG / PPAI로 인해 덜 유리한 값)

글리세린의

특정 사례와 이 규정이 글리세린 계산에 미치는 영향:

- 유기농 글리세린이 단일 성분으로서 COSMOS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기관은 유기농 비율을 다시 계산하고 수정된 유기농 함량이 COSMOS-standard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되도록 해야 한다
- COSMOS APPROVED 글리세린이 단일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인증기관은 비유기농 CPAI 비율이 COSMOS-standard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 해야 한다

7.1 유기농 인증 제품

7.1.1 원료

비누

이 계산에서 CPAI 비누는 비누화 반응에서만 유래된 CPAI와 일부 관련됩니다.

비누 제조 업체는 비누에 남아있는 물의 비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남은 물이 전체 비누 중량의 5% 미만일 수 없다고 간주합니다.

INCI 목록의 성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 비누화 전의 INCI(오일 및 소듐하이드록사이드 등)
- 비누화 후의 INCI(소듐코코에이트 등)

예시 1: 비누화 반응으로 제조된 비누(100kg)

이 계산법은 액상 및 고상 비누에 적용됩니다.

올리브 기름(유기농)	50%
스테아르산(비누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부분 제외)	10%
물	5%
구연산	1%
희석 가성 소다(50% 활성)	32%
에센셜 오일	2%
최종 완성 비누의 중량(건조 후)	91%

2단계를 고려합니다:

- 등급 계산(COSMOS ORGANIC/COSMOS NATURAL)
- 최종 유기농 함량(%)(COSMOS ORGANIC 제품 표시용)

1단계: 완제품 등급 계산 (COSMOS NATURAL/COSMOS ORGANIC)(7.1.1)

7.1.1: '원료로 비누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식물성 기름 사용), 표준 변경 없음: 유기농 PPAI / 모든 PPAI > 95%'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농 PPAI / 모든 PPAI = $(50) / (50 + 2) = 96\% > 95\% \Rightarrow$ COSMOS ORGANIC 등급

2단계: 전체 제품의 유기농 함량 계산(%) (6.2.4 방법에 기초한 7.1.2)

7.1.2: COSMOS-standard 7.1.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비누(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는 완제품 중 유기농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6.2.4: '유기농 CPAI 함량(%) = $[(\text{모든 유기농 주요 원료} - \text{과량 유기농 주요 원료}) / (\text{모든 주요 원료} - \text{과량 주요 원료})] \times 100$ '

유기농 CPAI 함량(%) = $(\text{유기농 올리브 오일} - 0) / (\text{모든 원료} - \text{증발된 수분})$

과량은 건조 단계에서 손실된 수분의 양입니다.

유기농 CPAI 함량(%) = $(50 - 0) / (100 - 9) = 50/91 =$ 유기농 함량 54.9%

완제품의 유기농 함량(%) = 건조 비누 중량에서 유기농 원료 함량(%)

비누는 항상 수분을 함유합니다.

유기농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경우, 최종 유기농 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농 CPAI(%) = $(50 + 2 - 0) / (100 - 9) = 52/91 =$ 유기농 함량 57.1%

예시 2: 면 형태의 비누(습 누들)(100kg)

유기농 에센셜 오일	2%
습 누들	98%
습 누들 구성:	
올리브 오일(유기농)	52%
스테아르산(비누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부분 제외)	10%
물	5%
구연산	1%
희석 가성 소다(50% 활성)	32%

COSMOS 인증 습 누들을 사용할 경우,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함량 및 COSMOS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합니다. 자체 제작한 비누면을 사용하는 경우 이전에 언급한 예시를 고려하십시오.

CPAI: $52 + 10 + 1 = 63\%$

유기농 CPAI 비누: $52/52 = 100\%$

유기농CPAI: $52 / (100+0) = 52\%$

1단계: 완제품 등급 계산(COSMOS NATURAL/COSMOS ORGANIC)(7.1.1)

COSMOS-standard 7.1.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비누(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는 완제품 중 유기농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기농 PPAI + 유기농 CPAI 비누) / (모든 PPAI + CPAI 비누) > 95%, 다음 식으로 등급 결정:

완제품 등급: $(2+100) / (2+100) = 100\% \Rightarrow \text{COSMOS ORGANIC}$

- 비누의 경우 CPAI는 항상 100%입니다

비유기농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 최종 유기농 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제품 등급: $(100) / (2+100) = 98\% \Rightarrow \text{COSMOS ORGANIC}$

2단계: 전체 제품의 유기농 함량 계산(%) (6.2.4 방법에 기초한 7.1.2)

7.1.2: 예외적으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비유화 수용성 제품, 미네랄 또는 미네랄 유래 성분이 80% 이상인 제품은 전체 제품의 10%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begin{aligned}
 \text{유기농 함량(\%)} &= \text{유기농 PPAI} + \text{유기농 CPAI} \\
 &= 2 + [\text{유기농 CPAI(누들)} \times \text{최종 비누 제품의 누들 비율}] \\
 &= 2 + [(52 \times 98) / 100] \\
 &= 2 + 50.9 \\
 &= 52.9\%
 \end{aligned}$$

비유기농 에센셜 오일의 경우, 최종 유기농 함량은 50.9%가 됩니다.

7.1.2 완제품

천연 및 유기농 인증을 받은 재구성 제품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1) 고품 분말 및 정해진 양의 물을 병에 담아 혼합하라는 화장품 생산 업체의 정보가 포함된 고품 분말. 여기에서 재구성된 제품에 대한 인증 결정이 내려집니다(제품 표시에 명확하게 정의된 물의 양 추가). 따라서 재구성된 제품은 COSMOS-standard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고체 바(비누, 합성세제, 분말)로 물과 함께 사용되지만 사용하는 물의 양을 정의하기는 어려움. 이 경우는 일반적인 샴푸/샤워 젤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건조 제품에 대한 인증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건조 제품(물을 첨가하기 전)은 기존 COSMOS-standard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7.2 NATURAL 인증 제품

천연 및 유기농 인증을 받은 재구성 제품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1) 고품 분말 및 정해진 양의 물을 병에 담아 혼합하라는 화장품 생산 업체의 정보가 포함된 고품 분말. 여기에서 재구성된 제품에 대한 인증 결정이 내려집니다(제품 표시에 명확하게 정의된 물의 양 추가). 따라서 재구성된 제품은 COSMOS-standard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고체 바(비누, 합성세제, 분말)로 물과 함께 사용되지만 사용하는 물의 양을 정의하기는 어려움. 이 경우는 일반적인 샴푸/샤워 젤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건조 제품에 대한 인증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건조 제품(물을 첨가하기 전)은 기존 COSMOS-standard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7.3 천연 함량 계산 방법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7.4 팜유와 팜핵유 및 파생 제품

COSMOS-standard를 충족하는 표준 7.4의 성분은 팜유 유래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00% 유채씨유로 생산된 글리세린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록 VI 및 VII와 관련된 페이지 41의 부족(shortage)에 대한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7.5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인증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7.6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원료 승인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8. 보관, 제조 및 포장

'무료 증정품(무역박람회 등)'의 용도로 사체에 샘플을 충전하는 경우, 충전하는 제조 단위가 인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다면 COSMOS 인증 기관의 심사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깎을 수 있는 연필은 기본 포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포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8.1 보관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8.2 제조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8.3 포장

튜브, 용기, 크림 용기, 마개, 캡슐, 사체, 박스 등 완제품 포장의 각 구성품은 이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기술적 용도의 부품의 예시는 표준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식용 화장품 어플리케이터, 스패츨러, 스푼 또는 제품에 부착되는 리본이나 로프 등 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부속품
- 브러쉬나 어플리케이터, 플록, 롱 등 장식용 화장품의 모든 기술적 부품...
- 이음부로 기능하는 모든 구성 요소
- 밀봉제로 기능하는 모든 구성 요소
- 카드 및 종이의 코팅
- 드롭퍼와 점적기용 마개
- 플라스틱 주형과 같이 부수 포장 내부에 추가되는 요소
- 립스틱/립밤의 외부(사용 가능한 대체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
- 개스킷
- 신축성 내부 파우치
- 라벨 소재, 잉크, 접착제
- 라이너
- 펌프 윤활유, 펜슬 풀 등에 사용되는 접착성 물질(화장품 제형에 오염이 없고 별도로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부족한 부분이 없어야 함)
- 포장재 생산을 위한 제조 보조제(수지 등)
- 립스틱 구조재: 제품을 회전하거나 밀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내부 부품
- 멀티 레이어
- 무료 샘플용 포장

- 보호용 슬리브, 밀폐 부위에만 사용 가능 제품 전체를 슬리브 처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형 제품(장식용 화장품 등)은 예외로 전체 슬리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펌프와 관련 마개(용기 점검 필요)
- 선물 상자나 마지막 재고 등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부수 포장

8.3.1 지표 예시

아래 표에서는 포장 기준이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지표를 보여줍니다.

선택된 지표(아래 예시 또는 이외)는 문서검토 단계 및 현장심사 동안 확인됩니다.

		EXAMPLE OF CASES		
Indicators	Examples of indicators	Case Nr 1 Jar	Case Nr 2 Glass Bottle	Case Nr 3 Aluminium Bottle
1- REDUCE				
Appropriate volume or weight ratio between packaging (primary and secondary) and product	Case: 10ml bottle in a box for 30ml bottle with cardboard inside to protect the bottle Solutions for change: • use bigger bottle in order to reduce ratio packaging/ product • use thinner bottle/cap to reduce again ratio packaging/product • use a 30ml bottle to avoid cardboard inside • use a 10ml box to avoid cardboard inside • no box at all			
No secondary packaging		✓		✓
Sale in bulk product	eg. sold as unpacked finished products			
No single use products such as samples		✓		
2- REUSE				
Refillable/ reusable packaging	eg. Refill bag version of finished product	✓		✓
Returnable glass and other materials			✓	
Second life packaging organised by the operator	ie. Primary packaging, secondary packaging, shipping materials...			
3- RENEWABLE				
Renewable materials (a renewable material is a material derived from natural resources that can be replenished over generations)	eg. From vegetable fats/oils, corn starch, woodchips, food waste, cellulose, lactic acid			
Biodegradable or compostable packaging material				
Environmental certification for paper/card	eg. FSC/PEFC			
Use natural based inks and adhesives on labels or silkscreen printing	eg. sunflower oil based ink eg. plant-based dyes/ pigments from minerals			
4- RECYCLE				
Use minimum 20% recycled content in the primary packaging	eg. Certification Recycled Claim Standard (RCS)/ Global Recycled Standard (GRS)			✓
Use monomaterials for primary packaging (containers & lids)			✓	
Use monomaterial pump				
Use primary and secondary packaging materials (if not monomaterials) that can be separated as per companies' local recycling instructions	eg. Glass bottle with plastic cap that can be separated before put in for recycling			
Organise empty packaging recollection/deposit by company itself or external third party				
Use recyclable label materials to help recycling process			✓	

8.3.2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8.3.3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8.3.4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8.3.5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8.3.6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8.4 섬유

하이드로겔 마스크의 경우:

- 안면마스크를 위해 사용되는 하이드로겔은 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섬유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COSMOS ORGANIC 제품에서 하이드로겔은 100% 유기농이지 않아도 됩니다
- 하이드로겔과 로션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포뮬라로 보아야하며 COSMOS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무료 샘플 사례:

- 무료 섬유 샘플/증정품(예: 인증된 선물 세트에 포함된 플란넬)은 GOTS 또는 OCS 100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9. 환경 관리

9.1 환경 관리 계획

9.1.1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9.1.2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9.2 세척 및 위생

제조 공정에 관련되지 않은 세척 제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화장실, 바닥, 비유기농 제품 등)

다음과 같은 유기농 표준에 따라 인증된 식물 기반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ocert, Ecogarantie, ICEA, Nature & Progress, Soil Association, United States National Organic Program(NOP), Australian Organic Standards(AOS).

Nordic Swan 또는 Ecolabel이 포함된 환경 라벨 제품은 유효 성분(알코올, 보습 성분 등), 용매와 계면활성제가 천연 유래로 확인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존제, 소포제와 향료는 천연 유래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척제에 대한 기타 표준은 평가를 위해 COSMOS 기술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 규정에서 특정 세척제의 사용을 명시한 경우, 기술 위원회에 예외 적용을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9.2.2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9.2.3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9.2.4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10. 인증 표시 및 정보 전달

10.1 일반 규정

'유사' 로고는 표준이나 제삼자의 평가 없이 인증이나 품질을 보장하는 로고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시로, 제삼자의 통제 없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로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유기농 로고는 COSMOS 천연 제품 또는 승인 원료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COSMOS 천연 완제품에 '바이오' 또는 '유기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로고가 없어야 합니다. 회사명이나 상표는 로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기술 위원회에 설명을 요청합니다.

표준의 10.3항에서 천연 제품의 유기농 원료 표시 제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인증 기관의 의견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사 '유기농 로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0.2 유기농 인증 제품

유기농 식품 및 농업법(이전 COPA-캘리포니아주 유기농 제품법으로 알려짐)에 따라 '소금'은 염화나트륨을 의미합니다.

10.3 천연 인증 제품의 경우

유기농 식품 및 농업법(이전 COPA-캘리포니아주 유기농 제품법으로 알려짐)에 따라 '소금'은 염화나트륨을 의미합니다.

10.4 유기농 성분을 함유한 원료

COSMOS CERTIFIED 라벨 사용에 관한 운영자의 책임 예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 a. COSMOS CERTIFIED 원료의 제조업체
- b. 원료의 중간 유통업체
- c. COSMOS 처방에 해당 원료를 사용하려는 화장품 제조업체

예시1. 유통업체가 원료를 재포장하는 경우, 해당 원료는 더이상 COSMOS CERTIFIED가 아닙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체는 유통업체에게 해당 원료의 COSMOS 인증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예시2. 중간 유통업체가 원료에 자체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재포장은 없지만 원료 제조업체의 라벨이 제거됩니다. 이 경우 COSMOS CERTIFIED가 아닙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체는 유통업체에게 해당 원료의 COSMOS 인증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예시 3 중간 유통업체가 원료에 자체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재포장은 없고 원료 제조업체의 라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해당 원료는 여전히 COSMOS CERTIFIED 상태입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체는 유통업체가 원료를 별도로 인증할 필요 없이 해당 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어떤 경우든, 유통업체는 인증기관과 계약을 맺고 해당 원료를 COSMOS 원료 데이터베이스에 본인 명의도 등재하지 않는 한 자체 라벨에 COSMOS CERTIFIED 서명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10.5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원료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승인받은 원료에는 인증이나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인증 표시나 관련 문서에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COSMOS는 COSMOS 인증 원료의 제조자가 제조를 위해 원료를 선택할 때 혼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요구 사항을 시행합니다. COSMOS APPROVED 원료는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으며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입니다.

따라서 비유기농 원료 공급 업체는 COSMOS APPROVED 원료에 어떤 언어로든 인증, 유기농 또는 BIO라는 단어를 원료명이나 라벨 및 관련 문서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회사명인 경우 예외). 예를 들어, 천연 완제품에 'BIO' 또는 '유기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로고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평가하는 것은 인증 기관의 책임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xxx 바이오	유기농 xxx	xxx 오가닉
바이오-xxx	xxx 유기농	오가닉-xxx
바이오 xxx	유기농-xxx	오가닉 xxx

COSMOS APPROVED 표시 사용에 대한 운영자 책임의 예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엔티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 COSMOS APPROVED 원료의 제조사
- b. 원료의 중간 유통 업체
- c. COSMOS 포뮬라에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화장품 제조 업체

예 1 유통 업체가 소재를 재포장하므로 해당 성분은 더 이상 COSMOS APPROVED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화장품 제조 업체는 유통 업체에게 내부 평가를 위해 인증 기관에 원료 설문지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예 2 중간 유통업자는 성분에 자체 표시를 붙입니다. 재포장은 안되지만 성분 제조 업체의 표시는 제거됩니다. 따라서 해당 성분은 더 이상 COSMOS APPROVED가 아닙니다. 화장품 제조 업체는 인증 기관에 승인을 위해 원료 설문지를 제출하도록 유통 업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예 3 중간 유통 업체는 성분에 자체 표시를 붙입니다. 재포장하지 않으며 성분 제조 업체의 표시를 보관합니다. 따라서 성분은 여전히 COSMOS APPROVED를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화장품 제조 업체는 중간 유통 업체가 원료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 성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통 업체는 인증 기관과 계약을 맺지 않고 자체 이름으로 COSMOS 원료 데이터베이스에 성분을 나열하도록 신청하지 않는 한 자체 표시에 COSMOS APPROVED 시그니처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 원료 제조 업체가 COSMO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COSMOS와 관련된 어떠한 마케팅 정보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원료 라벨에 COSMOS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성분 제조 업체가 인증 기관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COSMOS 공식에 COSMOS APPROVED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성분을 사용하려는 화장품 제조 업체의 경우입니다.

10.6 홍보 문구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10.7 회사명이나 제품군에 유기농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10.8 이 표준과 관련된 시그니처, 이름, 용어의 사용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11. 인증 및 승인

제품 또는 원료 인증, 비유기능 완료의 승인을 위해 공인된 인증기관에 적용되는 절차적 요구사항은 COSMOS 표준 Control Manual 8조, 8.3.2항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증사업자가 어떻게 심사를 받게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1 인증

문서 평가 및 현장 심사 준비

인증 범위 1(범위 1)에서 인증된 제품이나 원료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 제형, 표시, 포장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원료에 대한 평가는 기술 데이터 시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각종 문서 및 모든 준수 사항을 요약한 원료 사용 질문서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평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적합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성은 다음 두 범주로 분류됩니다:

- '경미한' 부적합

경미한 부적합성은 인증 대상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COSMOS-standard의 원칙, 그리고 핵심 요구 사항과 상충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부적합 사항입니다.

- '중대한' 부적합

중대한 부적합성은 인증 대상 제품의 특성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일정 시간 후 특성이 변화될 수 있거나, COSMOS-standard의 원칙과 핵심 요구 사항과 상충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합 사항입니다. 일부 주요 부적합 사항은 중대한 조치(시정 계획 참조)나 제품 인증 취소, 극단적인 경우 고객의 인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정 계획

시정 계획에 부적합 목록을 포함하고, 그 심각성에 따라 분류합니다. ('중대' 또는 '경미') 또한 부적합 사항별로 인증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조치 및 모든 추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인증 관련 조치는 부적합 사항의 본질과 심각성, 빈도와 규모, 사기 위험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절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부 인증 유지
- 인증 범위 축소
- 인증 정지
- 인증 철회

11.2 승인된 원료

원료 사용 질문서

모든 비유기농 원료(인증 범위 2)의 경우, 인증 기관은 원료 승인을 위해 COSMOS 가 정한 기본 질문이 담긴 원료 사용 질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인증 기관이 범위 2로 분류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정을 받은 기관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유기농 원료

적합한 비유기농 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cosmos-standard.org/en/databases/approved-raw-materials/.

COSMOS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된 원료는 모든 인증 기관에서 인정하고 승인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비밀번호로 보호되며, 인증 신청자와 고객, 공인 인증 기관, COSMOS 회원 및 협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공인 인증 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합니다.

별표*로 식별된 원료는 부록 II(석유 화학 용매 또는 활성화 단계의 할로겐화 공정) 또는 부록 V.2 (PPAI 추출을 위한 석유 화학 용매), 부록 V.3(석유 화학 부분을 함유하는 원료), 부록 V.4(기타 농산물 원료)와 연관됩니다. INCI명이 동일하더라도 제조 공정에 따라 구분하거나 구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가 있는 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시장 수급이 원활하다면 해당 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유기농 원료는 적어도 3년마다(또는 변경 발생 즉시) 승인 원료의 공정이나 유래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 확인 및 검토를 위해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료 상태 변경

다양한 이유(공정 변경, 오류 등)로 원료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부적합 또는 표준에 부합하나 최종 원료/제품 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함량 변경). 이 경우 기술 위원회가 상황, 영향 및 잠재적 대안을 고려해 전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원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며 새로운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3 인증 기관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12. 표준 이행

12.1 효력 발생

COSMOS 표준 버전 4.2에 지정된 날짜에 효력을 가지며 유효합니다. 버전 4.2의 발행일과 발효일은 동일합니다.

12.2 적용일

COSMOS 표준 버전 4.2에 지정된 날짜 이후 인증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신규 완제품 및 원료에 적용됩니다. 버전 4.2의 발행일과 발효일은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전환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12.3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2.3 전환 조치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부록 I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에탄올, 해조류 및 비트 뿌리와 같은 비유기 1차 식물 성분의 보존 또는 처리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부록 II

생명 공학 공정(발효, 줄기 세포 배양 등)

암모니아/암모늄염 및 기타 질소 공급원은 허용됩니다. 나트륨셀레나이트는 셀레늄 공급원으로 허용됩니다.

아미드화(AMIDATION)

암모니아는 아민(amine)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중화 반응(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칼륨염 생성용으로 허용)

암모니아는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와 암모늄글리시리제이트를 생성하는 중화 반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생분해성 및 수생독성을 포함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암모늄염도 사용할 수 있음).

에탄올, 해조류 및 비트 뿌리와 같은 비유기 1차 식물 성분의 보존 또는 처리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부록 III

모든 수산화나트륨과 탄산칼륨(INCI: 소듐하이드록사이드,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술적 발전에 따라 검토될 예정입니다.

부록 IV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부록 V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부록 VI 및 부록 VII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해야 하는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부록 VI)

COSMOS ORGANIC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유기농이어야 하는 원료(표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목록에 속하는 것)

- 혼합물이 아닌 단일 성분
 - 부록 VI에 따라 유기농을 사용해야 합니다(예: 해바라기 오일 또는 해바라기 왁스)
 - 첨가제로 안정화되거나 보존제를 함유한 단일 성분
 - (예: 토코페롤로 안정화된 해바라기오일).
- 단순 혼합물(2 성분)- 두 종류의 하이드롤레이트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 부록 VI에 따라 유기농 품질을 사용해야 합니다(예: 해바라기 오일을 사용한 허브 추출물/매세라이트)
 - 만약 원료 중 하나가 다른 유효 성분에 용매로 첨가된다면, 그 성분은 비유기농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예: 해바라기 오일에 용해된 토코페롤)
- 복합 화합물(성분 3종류 이상)
 - 부록 VI과 VII에 수록된 혼합물의 원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장품 제조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조한 혼합물이 아닌 상업적으로 판매/사용되는 혼합물인 경우에만 혼합물로 간주됩니다.

정제유의 특정 사례

정제유는 비정제유와 동일한 INCI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록 VI는 INCI 이름을 기반으로 하므로 부록 VI에 나열된 INCI 이름을 가진 정제유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 혼성 해바라기씨 오일 ▶ 부록 VI에 나열되지 않았으므로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해바라기씨오일 ▶ 부록 VI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해야 하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부록 VII)

COSMOS ORGANIC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유기농이어야 하는 원료(표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목록에 속하는 것)

- 혼합물이 아닌 단일 성분
 - 이 규정은 첨가제로 안정화되거나 보존제를 함유한 단일 성분 원료에도 적용됩니다 (변성제와 함께 사용된 에틸알코올 등)
- 단순 혼합물(2 성분) - 알코올 추출물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 부록 VI과 VII에 따라 유기농 품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허브 추출물)
- 복합 화합물(3 성분 이상)
 - 이 기준은 혼합물의 인증 가능한 모든 원료가 부록 VI과 VII에 수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증된(유기농 또는 CSPO) 원료 부족

부족이란 필요한 양의 준수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규정 준수 성분의 가격이 더 높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부록 VI와 VII에 수록된 인증 원료가 부족한 경우, 인증 기관은 관리 표준서 및 아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사용 가능한 유기농 원료를 구할 수 없는 실정과 이유, 가능하다면 지속 기간(흥년 등)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인증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은 고객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유기농 원료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는 인증된 소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급 업체의 서면 확인서를 세 번 제공해야 합니다.

유기농 원료의 경우, 인증 표시와 및 홍보 자료는 판매 시점에 원료의 유기농 상태가 변경된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시에 변경해야 합니다(제품 표시 위에 부착(스티커) 또는 고객사의 홈페이지에 명확히 공지 등). 이 표시는 인증 기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제품과 원료 모두에 적용됩니다.

위의 모든 사항을 준수한다면 일정 기간 예외가 허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원자재를 구매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정기적인 가용성 검토와 같은 모니터링 관행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고객이 기록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부록 VIII

발효, 생명 공학, 생체 효소 반응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자는 독성 및 생분해성 데이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REACH 등록 화학 물질 데이터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echa.europa.eu/web/guest/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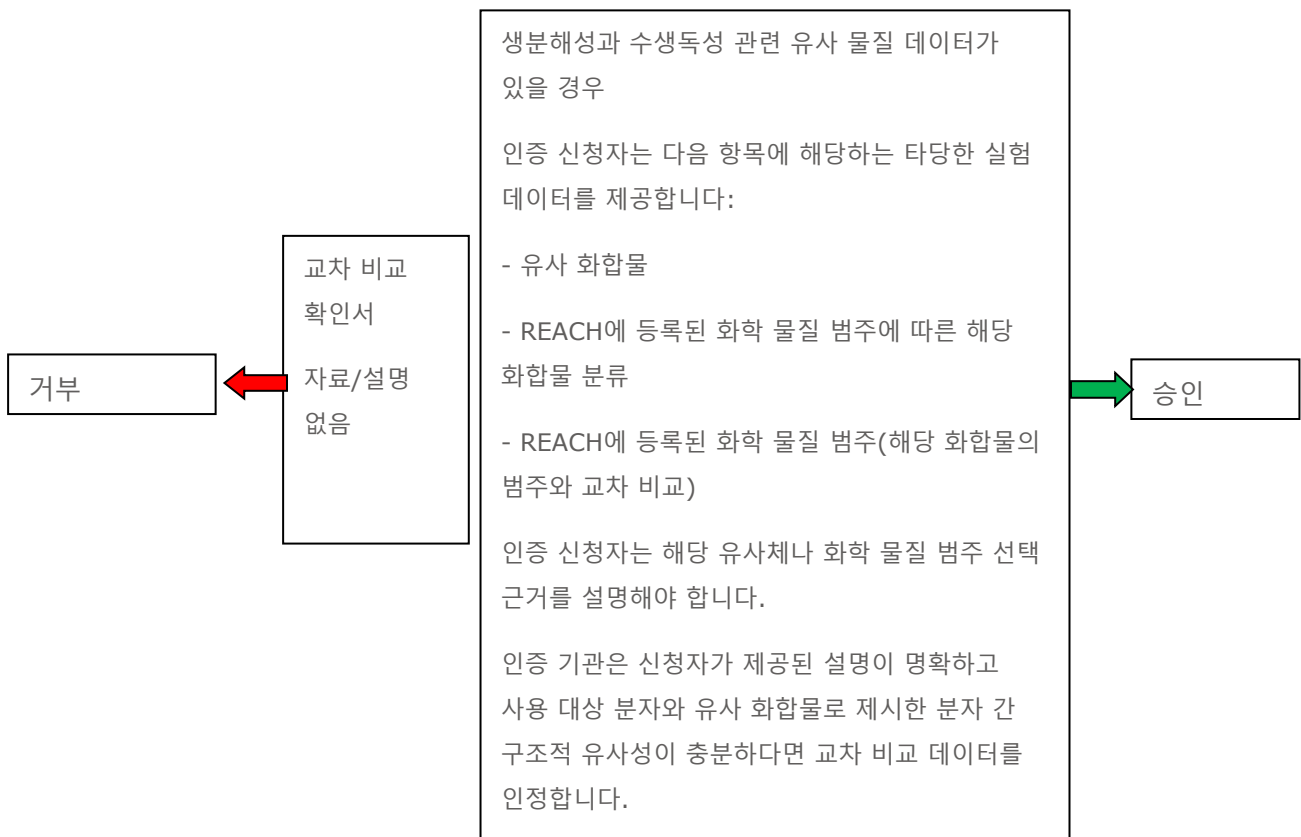
[http://www.echa.europa.eu/web/guest/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http://www.echa.europa.eu/web/guest/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

PLA 및 기타 고체 플라스틱의 생분해성은 부족하므로 이러한 원료는 COSMOS 인증 제품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PLA는 COSMOS-standard의 부록 VIII에 나열된 '단량체의 에스터화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6.1.4에 정의된 비지속성 제품 특성을 충족하는 중합체(고분자)'에 대한 예외 사항에 따라 제외됩니다.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필요한 생태학적 정보(생분해성과 수생독성)와 자료(ECHA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공개 자료)가 없을 경우, 다음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접근법 - 교차 비교:



분자 구조의 유사성은 다음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분자에 존재하는 작용기
- 분자가 속하는 화학 물질 범주
- 분자의 탄소 골격, 분자에서 가장 반응성이 높은 작용기가 화학 등급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작용기가 같을 경우 탄소 골격상 미미한 차이(탄소 4~8개)가 발생해도 분자의 특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차 비교 데이터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예시

미리스틸미리스테이트: REACH 범주: 지방산, C10~18 및 C12~22 불포화, C14~18 및 C16~18 불포화알킬에스터.

QSAR(정량적 구조 활성 관계):

QSAR 계산 접근법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는 다음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검증된 모델에서 해당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링크 - Reach 지침)
- 화학 물질이 검증된 모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두 대체 접근법은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부록 IX

표준의 이 섹션에 대한 추가 해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COSMOS-standard AISBL

**Rue Marie Thérèse 11 – 3rd floor,
1000 Brussels, Belgium**

info@cosmos-standard.org